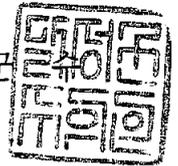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
----------	-----

제출일자 : 2007. 2.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를 위해 조직을 우리군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청 기구개편

· 국 명칭변경

- 사회산업국 ⇒ 주민생활지원국 (안 제3조)

· 과 신설(증3)

- 주민생활지원과, 청소위생과, 건축과 (안 제6조 및 제7조)

· 과 이관

- 농축산과 : 사회산업국 ⇒ 농업기술센터 (안 제12조제3항)

· 과 명칭변경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 경제투자지원과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 총무과 ⇒ 행정지원과 - 허가민원과 ⇒ 종합민원과

- 민원지적과 ⇒ 토지정보과 - 복지위생과 ⇒ 사회복지과

- 도로교통과 ⇒ 교통행정과 - 도시건축과 ⇒ 도시시설과

○ 보건소 기구개편

· 과 신설 : 보건과 (안 제8조제2항)

-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
 - 과 조정 : 1담당관 ⇒ 2과 (안 제12조제3항)
 - 농축산과 (사회산업국에서 이관)
 - 기술담당관 ⇒ 기술지원과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폐지

4.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439(2006. 9. 19)】
 -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 계획 【시 기획관실-16(2007. 1. 3)】
- 개정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 : 2007. 1. 19 ~ 1. 29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장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군 본 청

제 3 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건설도시국을 둔다.

제 4 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과학기술지원담당관을 둔다.

제 5 조 (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행정지원과·세무과·회계과·종합민원과·토지정보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관리국 소관 및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식·서무·보안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인사·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원단체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5. 민방위에 관한 사항
6. 행정구역·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읍·면 행정의 종합·조정 등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0. 예산지출·공사계약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11. 차량·물품 및 청사관리등에 관한 사항
12. 민원행정의 종합기획등에 관한 사항
13. 공장등록·농지산림·건축·도시·오수등 복합 민원의 허가·신고에서 준공까지에 관한 사항
14. 공시지가·부동산·지적관리등에 관한 사항
15. 전산·통신·문서(기록물)관리·통계·정보기획에 관한 사항
16. 기타 행정지원,세무,회계,종합민원,토지정보,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7. 그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6 조 (주민생활지원국)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환경관리과·청소위생과 및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및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가정·노인·장애인·여성복지 및 청소년·아동보육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및 교육지원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관광개발·체육진흥·문화재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질·수자원·대기관리등에 관한 사항
8. 청소·재활용·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0. 환경·위생 등 민원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12.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
13. 불법 주·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6. 차량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주민생활지원·사회복지·문화체육·환경관리·청소위생·교통
행정에 관한 사항

제 7 조 (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시설과·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도시국 소관 및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교량건설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5. 하수도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기반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도시·건설 등 지도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도시정비·구획정리사업등에 관한 사항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한 사항
10. 각종 체육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13. 하천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림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녹지 및 공원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
16.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건설·도시시설·재난안전관리·건축·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 8 조 (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에는 보건과를 둔다.

③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 과 같다.

제 9 조 (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10 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운영) 보건업무를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 12 조 (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2521-1번지에 둔다.
- ③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축산과·기술지원과를 둔다.

제 13 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14 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의 기획 조정
2.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유통정책의 종합기획 조정
4. 농촌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6. 농수축산물 생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과수, 채소, 시설원에 기술지도·개발 및 지원
9.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
10. 농업인 단체 지원 및 관리
11.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축산기술 지원
12. 기타 농축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 4 장 읍·면

제 15 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16 조 (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및 리·반조직 운영, 구호·산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 17 조 (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고,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5 장 읍·면 출장소

제18 조 (설치) ① 법 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2] 와 같다.

제 19 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20 조 (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민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기획담당”을 “정책기획담당”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중 “사업소·사업소장”은 삭제하고,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8조, 제12조중 “총무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업무담당 6급”을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사회업무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과학기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⑮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농축산경제과”를 “농축산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달성군보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93-1	달성군 일원
화원읍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26-1	화원읍 일원
논공읍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98	논공읍 일원
다사읍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494	다사읍 일원
가창면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82	가창면 일원
하빈면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865	하빈면 일원
옥포면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814-3	옥포면 일원
유가면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848-6	유가면 일원
구지면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39-1	구지면 일원
서재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24-3	세천리, 서재1·2리, 방천리,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봉춘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춘리 122-1	봉춘1·2리, 동곡1리
무등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 530-1	대평1·2리, 무등1·2리, 기곡1·2리
반송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166-2	기세리, 반송1·2리, 김홍1·2·3리
용봉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59-6	봉리, 용1·2·3리, 상리, 쌍계1·2리, 초곡리, 음리, 양리1·2리
한정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가천리 636-1	한정1·2·3리, 가태1·2리, 본말1·2리
대암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231-3	대암1·2리, 목단1·2리, 유산리, 내1·2리
정리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정리 61-1	오설리, 도동1·2리, 정리
고봉보건진료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314-4	고봉리, 평촌1·2리, 가천리, 예현리, 응암1·3리

【별표 2】

음·면 출장소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논공읍 공단출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복리 1-130	공단 일원
다사읍 서재출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33	서재 일원